

외교부·국토교통부 청년 일자리 창출 협업 사업 재외공관 건설 분야 업무협약서

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간 연계와 상호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부처 간 재외공관 건설 분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 건설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사항)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, 상호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.

- 재외공관 건설 분야 전담인력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
 - 인력 파견 관련 비자 문제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
 - 파견비, 체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업무 역할에 관한 사항
 - 파견인력 선발 및 관리는 외교부에서 수행하며, 파견비 및 체재비 일부를 국토교통부(해외건설협회)에서 지원
- 기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

제3조 (협약의 해석·변경) 본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양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(효력 및 기간)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,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2019년 5월 9일



외교부

장관

강 경 화



조정기획관

김 영 완



국토교통부

장관

김 현 미



건설정책국장

이 성 해



해외건설협회

회장

이 건 기



부회장

송 영 완